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45호 2015. 12. 9. (수요일)

선 람	기 관 의 장
----------------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5-87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100차)····· 2
- 하동군 고시 제2015-90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4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5-970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허가공고(최우선)····· 6
- 하동군 공고 제2015-974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허가 공고((유)대룡기업 외1)· 7
- 하동군 공고 제2015-983호 하동군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 규칙 제정(안)입법예고····· 8
- 하동군 공고 제2015-985호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계획(안)····· 17
- 하동군 공고 제2015-994호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입재후보지 타당성조사 과정 및 결과 열람·공고 30
- 하동군 공고 제2015-1002호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31
- 하동군 공고 제2015-1003호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허가 공고(강태욱)····· 36
- 하동군 공고 제2015-1010호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허가 공고(박홍연)····· 37
- 하동군 공고 제2015-1020호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허가 공고(안방우)····· 38
- 하동군 공고 제2015-1021호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허가 (원목계 창조적마을만들기 조성사업) 39
- 하동군 공고 제2015-1029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체납자 부동산 압류 통지 공사공달 공고····· 40

회 람									
----------------	--	--	--	--	--	--	--	--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104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26.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관동길 42-9 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7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1. 2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3) 제 445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관리 170-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관동길 42-9	20151126	20070618	관동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106-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370	20151126	2007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 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월횡리 21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월횡길 64-30	20151126	20080402	월봉산 아래 위치하였고 도덕천이 월횡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921-29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삼신봉로 67	20151126	20090702	삼신봉과 산청군과 연결되는 삼신봉터널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139-3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427-37	20151126	20090702	정기룡장군 추모사당을 지나가는 도로로 지역의 역사성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811-7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삼신봉로 38	20151126	20090702	삼신봉과 산청군과 연결되는 삼신봉터널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80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삼화실로 107-12	20151126	20140701	옛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하동군 고시 제 2015-90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을 고시 합니다.

2015. 12. .

하 동 군 수

1. 붕괴위험지역 지정 내역

가. 붕괴위험지역 지정 : 1개소

나. 관련법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지구명	위 치	등급 및 규모			지정사유
		유형	등급	현황	
합 계	1개소				
목계지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산72-5, 산32-5 번지 일원	붕괴 위험 지역	D	· L=1.6km · H=30.0m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기사항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 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우리군 안전총괄과(복구지원)와 협의하여야 함.

3.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 2015. 12. 03.
4. 의견제출 및 문의처 : 경상남도 하동군 안전총괄과(055-880-2252~3)
5. 위치도 및 현황사진



하 동 군 공 보

(6) 제 445 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 2015- 970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명)	최우선	주소	경남 김해시 장유로 362, 205동 1304호
소하천명		건너몰천		
공사(점용·사용)개요	위치	경남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535-11(임)		
	면적	117.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0㎡
	기간	2015.11.19. ~ 2020.11.18		
	목적 및 사유	토지점용		

열람서류(하동군 재난관리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 2015- 974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 용자)	상호 및 명칭	(유)대룡기업 외 1		
	대표자 (성 명)		주소	전남 순천시 중앙로 515(가곡동)
소하천명		독골천		
공사(점용 · 사용) 개요	위치	경남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1564(구)		
	면적	298.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0㎡
	기간	2015.11.20. ~ 2020.11.19.		
	목적 및 사유	토지의 점용(배수관 부설)		

열람서류(하동군 재난관리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하동군 공고 제2015-983호

하동군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 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 규칙
2. 제안 이유 : 「산림보호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불방지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예방 및 산불발생시 초기 진화체계를 확립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포상금 지급대상 규정(안 제3조)
 - 나.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규정(안 제4조 ~ 제5조)
 - 다. 산불방지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방법, 접수, 처리 등 규정(안 제6조 ~ 제8조)
 - 라. 포상금 지급 신청 및 환수(안 제9조 ~ 제11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12월 15일까지 하동군(참조 : 산림녹지과, 전화 880-2473 FAX 880-2469, e-mail : avantte6543@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 규칙(안)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산불방지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48조제3호에 따른 “산불방지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산불방지 등에 특별히 노력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에 기여한 자로서 그 공적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그 신고한 내용이 사법판결이나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나.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다.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단, 법 제34조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경우

마.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바. 법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인해 범위반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산림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공무원과 함께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6.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이미 포상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경우

7. 그 밖에 심의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하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 중 최초 신고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 동 군 공 보

(12) 제 445 호

제4조(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 표 1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한도) 제4조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동일한 자에게 월간(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한다) 50만원, 연간(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신고방법) 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불법행위의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7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①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그 밖에 신고한 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고,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 하동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은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의 환수) 신고자가 허위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로 인하여 제3조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이 경우 포상금 환수 방법은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14) 제 445 호

[별표 1]

적용범위 및 지급 금액(제4조 관련)

적용범위	지급금액	비고
1. 산불방지에 공로가 있는 자 가. 개인 나. 기관·단체	3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불관련 범법자를 신고한 자 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 구역에 들어간 경우 나.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다.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단, 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단, 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마.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경우 바.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사.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만원 1만원 5만원 3만원 3만원 2만원 3만원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연번	신고 일자	신고 방법	신고인			신고 내용			접 수 공무원 (인)
			성 명	주 소	연락처	피신고인 성명	피신고인 주소 또는 위 치	위반행위	

하 동 군 공 보

(16) 제 445 호

[별지 제2호서식]

산림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사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신고기관			
	피신고인	성 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위와 같이 산림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 동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1) 신분증 사본 1부.
-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하동군 공고 제 2015-985호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계획(안) 입법예고

하동군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11 월 24 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9721호, 2009년. 5. 27공포, 시행) 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농지법」 제44조가 삭제되어 「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하동군(참조: 농축산과, 전화(055-880-2414, FAX 880-2419, e-mail)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18) 제 445 호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계획 (안)

□ 폐지 이유

-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9721호, 2009. 5. 27공포, 2009.11.28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농지법」 제44조가 삭제되어
-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 폐지 근거

- 「농지법」 개정 【제44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삭제】
⇒ 법률 제9721호, 2009.5.27공포
⇒ 2009.11.28. 시행

□ 주요내용

-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 추진일정

- 입법예고 : 2015. 10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5. 11
- 군 의회 심사의결 : 2015. 11
- 공포 예정일 : 2015. 11

□ 참고사항

- 폐지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예산수반 사항 : 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불 입

-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안)1부

(붙임)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농지법 제44조

제44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①농지와 농지 임대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동지역만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구(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는 동지역만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읍 또는 면에 각각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그 관할 구역에 농지가 없는 시·구·읍 또는 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도지사는 지역 특성과 농지 분포 실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구·읍 또는 면에 하나의 농지관리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

하 동 군 공 보

(22) 제 445 호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91.10.17 조례 제1261호
(일부개정) 1998.08.12 조례 제1486호
(일부개정) 2001.01.11 조례 제1579호
(일부개정) 2007.08.27 조례 제1808호
(일부개정) 2013.04.10 조례 제2001호 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관리책임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연 락 처 : 880-2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2.조1486, 2001.1.11.조1579, 개정 2013.4.10.조2001>

제2조(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농지관리위원회 명칭은 ○○읍면·농지관리위원회라 한다.

제3조(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해당 읍 또는 면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3.4.10.조2001>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8.12.조1486>

1. <삭제 2001.1.11.조1579>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지의 조사 등 <개정 2013.4.10.조2001>

3. 영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개정 <2013.4.10.조 2001>

4. <삭제 2007.8.27 조1808>

5.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용증진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개정 2013.4.10.조 2001>

6.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 영 제 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관한 확인 <개정 2013.4.10.조2001>

7. 「농어촌 진흥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개정 2013.4.10.조2001>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 <개정 2013.4.10.조2001>

9. 그 밖에 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13.4.10.조2001>

제5조(위원회의 위원정수) ① 읍면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8.27.조1808>

하 동 군 공 보

(23) 제 445 호

② 읍·면농지관리위원장은 위원중에서 4~5명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1.1.11.조1579>

제6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 각 이장은 군수로부터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농지법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98.8.12.조1486, 2001.1.11.조1579, 개정 2013.4.10.조2001>

② 제1항의 경우 각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장 또는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위원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조1579, 개정 2013.4.10.조200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읍장 또는 면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천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조2001>

④ 군수는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읍장 또는 면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리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원으로 고루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조1579, 개정 2013.4.10.조2001>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및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심의 또는 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그 원인을 명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심의 및 조정 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심의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어느 한쪽과 친척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3.4.10.조200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피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위원회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해당 위원은 심의 및 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3.4.10.조2001>

④ 위원은 심의 또는 조정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 <삭제 1998.8.12.조1486>

제9조(조례개정의 건의) 위원회는 이 조례가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에 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하 동 군 공 보

(24) 제 445 호

-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 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 안건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임차료의 상한) <삭제 2001.1.11.조157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미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는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8.8.12.조1486>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미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를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1.1.11.조1579>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기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는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7.8.27.조1808>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미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는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2.조1486, 2001.1.11.조1579, 개정 2013.4.10.조2001></p> <p>제2조(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농지관리위원회 명칭은 ○○읍면·농지관리위원회라 한다.</p> <p>제3조(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해당 읍 또는 면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3.4.10.조2001></p> <p>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8.12.조148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1.1.11.조1579>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지의 조사 등 <개정 2013.4.10.조2001> 3. 영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개정 <2013.4.10.조2001> 4. <삭제 2007.8.27 조1808> 5.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용증진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개정 2013.4.10.조2001> 	<p>전부 폐지</p>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6.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약에 관한 확인 <개정 2013.4.10.조2001></p> <p>7. 「농어촌 진흥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개정 2013.4.10.조2001></p> <p>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 <개정 2013.4.10.조2001></p> <p>9. 그 밖에 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13.4.10.조2001></p> <p>제5조(위원회의 위원정수) ① 읍면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8.27.조1808></p> <p>② 읍·면농지관리위원장은 위원중에서 4~5명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1.1.11.조1579></p> <p>제6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 각 이장은 군수로부터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농지법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98.8.12.조1486, 2001.1.11.조1579, 개정 2013.4.10.조2001></p>	<p>전부 폐지</p>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의 경우 각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장 또는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위원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조1579, 개정 2013.4.10.조2001></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읍장 또는 면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천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조2001></p> <p>④ 군수는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읍장 또는 면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리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원으로 고루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조1579, 개정 2013.4.10.조2001></p> <p>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및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심의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그 원인을 명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심의 및 조정 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심의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p> <p>2. 당사자의 어느 한쪽과 친척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3.4.10.조2001></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피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위원회 의견을 들어 기피 신청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해당 위원은 심의 및 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3.4.10.조2001></p>	<p>전부 폐지</p>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④ 위원은 심의 또는 조정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회피할 수 있다.</p> <p>제8조(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 <삭제 1998.8.12.조1486></p> <p>제9조(조례개정의 건의) 위원회는 이 조례가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에 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p> <p>제10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 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 안건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p>	<p>전부폐지</p>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임차료의 상한) <삭제 2001.1.11.조 1579></p> <p style="padding-left: 40px;">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미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는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p> <p style="padding-left: 40px;">부 칙 <개정 1998.8.12.조1486></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이미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를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p> <p style="padding-left: 40px;">부 칙 <개정 2001.1.11.조1579></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기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는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p> <p style="padding-left: 40px;">부 칙 <개정 2007.8.27.조1808></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이미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는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p> <p style="padding-left: 40px;">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 2001></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전부폐지</p>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과정 및 결과 열람·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과정 및 결과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하 동 군 수

1. 조사 개요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상지역 : 하동군 일원

나. 폐기물처리시설 종류 및 규모

- 부지면적 : 50,000m² 이상
- 폐기물소각시설 : 30톤/일(여열회수시설 포함)
- 재활용선별시설 : 10톤/일
- 폐기물매립시설 : 30,000 m² (매립용량 225,000m³) 이상

2. 조사 과정 및 결과

- 폐촉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입지타당성조사 계획(공고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4 -672 호)에 따라 조사
- 후보지 조사·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라 후보지별 평가

3. 열람기간 : 2015. 11. 26. 00:00 ~ 2015. 12. 16. 00:00(20일간)

4. 열람사항 : 입지타당성조사 과정 및 결과의 개요

5. 열람장소 : 입지선정위원회(하동군 환경보호과)

6. 의견제출 : 2015. 12. 17. 00:00 ~ 2015. 12. 31. 00:00(15일간)

- 의견제출처 : 입지선정위원회(하동군 환경보호과)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하동군 환경보호과(055-880- 2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공고 제 2015-1002호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평생학습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신설하여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평생학습, 전화 880-2182/2184, FAX 880-2159, e-mail jjh225@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32) 제 445 호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붙임1】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평생학습관은”을 “평생학습관은”으로 한다.

제11조제5호와 제6호를 각각 제6호와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 14조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제12조와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면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상담을 제공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읍·면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역 평생교육기회 제공 및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 2. 평생학습상담
- 3. 읍·면·마을 단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4.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사업
-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중전의 제12조) 중 “평생학습관의”를 “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의”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3조) 중 “평생학습관에는”을 “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34) 제 445 호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1조 ~ 제 10조. (생략)</p> <p>제11조(기능) <u>평생학습관은</u>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4. (생략)</p> <p><신설></p> <p>5.6.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12조(운영) 군수는 <u>평생학습관의</u>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p> <p>제13조(운영요원) <u>평생학습관에는</u>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p> <p>제14조 ~ 제16조. (생략)</p>	<p>제 1조 ~ 제 10조. (현행과 같음)</p> <p>제11조(기능) <u>평생학습관은</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u></p> <p>6.7. (현행 제5호·제6호와 같음)</p> <p>제12조(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u>군수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면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상담을 제공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u></p> <p>제13조(기능) <u>읍·면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p> <p>1. <u>지역 평생교육기회 제공 및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u></p> <p>2. <u>평생학습상담</u></p> <p>3. <u>읍·면·마을 단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u></p> <p>4. <u>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사업</u></p> <p>5. <u>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제14조(운영) --- <u>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의</u> ----- -----.</p> <p>제15조(운영요원) <u>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에는</u> ----- -----.</p> <p>제16조 ~ 제18조. (현행 제14조 ~ 제16조와 같음)</p>

관 계 법 령

□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1.28.>

5. 제21조의2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제21조의2(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하 동 군 공 보

(36) 제 445 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 2015-1003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 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강태욱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19 지곡그린빌라 312동104호
소하천명		가탄천		
공사(점용 ·사용) 개요	위치	경남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1564(구)		
	면적	116.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0㎡
	기간	2015.11.20. ~ 2020.11.19.		
	목적 및 사유	토지의 점용		

열람서류(하동군 재난관리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 2015-1010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 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박홍연	주소	하동읍 부두길 23
소하천명				
공사(점용 · 사용) 개요	위치	경남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면적	298.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51.0㎡
	기간	2015.12. 1. ~ 2020.11.30.		
	목적 및 사유	토지의 점용(진출입로)		

열람서류(하동군 재난관리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하 동 군 공 보

(38) 제 445 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 2015- 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 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안방우	주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234
소하천명		세동천		
공사(점용 ·사용) 개요	위치	경남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1749(천)		
	면적	1,776.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6. 1. 1. ~ 2020.12.31.		
	목적 및 사유	토지의 점용(토사유실 방지)		

열람서류(하동군 재난관리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 2015- 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하동군수(건설교통과)		
	대표자 (성명)		주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소하천명		세동천		
공사(점용·사용)개요	위치	경남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1749(천) (인근지번 묵계리 883(답))		
	면적	336.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5.12. 2. ~ 영구		
	목적 및 사유	토지의 점용(목교설치)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하 동 군 공 보

(40) 제 445 호

하동군 공고 제2015-10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제5조(과징금) 및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의거 부동산 압류 후 압류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2. 4.

하 동 군 수

○ 공고기간 : 2015. 12. 4. ~ 2015. 12. 21.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체납자 부동산 압류		
2. 당사자	성명	(주) 제*부동산 (주)운*	주민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180111-***** 180111-*****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 *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 *층 ***호(***,*****)	
3. 위반 물건	○ (주)제*부동산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 외 2필지 ○ (주)운*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 외 1필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과징금)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 중임.		
5. 법적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과징금)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6. 처분내용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 압류 - (주)제*부동산 압류재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 산13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150, 산150-7, 산150-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서계리 산125-1, 산125-4 - 압류일자 : 2015.10.07. - 체 납 액 : 2,050,620원 - (주)운*부동산 압류재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150-11 - 압류일자 : 2015.10.07. - 체 납 액 : 611,160원원		
7. 기 타 문 의	○ 하동군 민원과 부동산관리 (☎ 055-880-2124)		